

kiri Weekly

2015.6.8 제336호

이슈

영국 DC형 퇴직연금제도 변화와 시사점

글로벌 이슈

글로벌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실태 최근 동향

중국 사적 건강보험 활성화 방안 발표와 시사점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변철성 수석담당역 / 02-3775-9115)



영국 DC형 퇴직연금제도 변화와 시사점

김세중 연구위원

요약

- 영국 정부는 DC형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 시 불이익을 축소하는 등 은퇴자의 퇴직연금 지급방식 선택권을 강화하는 개혁안을 시행함.
 - 2015년 4월부터 영국 정부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적용되던 고율의 과세를 소득세로 전환하면서 적립금 지급방식을 자율화함.
 - 은퇴자들은 여전히 종신연금을 선택할 수 있지만 지급방식이 자유로워지면서 적립금의 다양한 분할인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전통적인 종신연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저금리 상황에서 종신연금 수익성이 하락한 것도 이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방식에 제약이 없으며, 은퇴자의 대부분이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에 제약이 없고 연금수령을 장려하는 세제유인도 약한 것으로 평가되며, 일시금 수령과 연금선택 외에 다양한 지급옵션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지급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4%대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는 퇴직연금의 연금지급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임.
-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일시금 선호는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영국의 사례를 감안할 때 일시금 선택을 제한하는 조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퇴직연금 적립금 지급방식에 자율성이 보장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시금 선택을 제한하는 조치보다는 다양한 지급방식을 제공하고, 은퇴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급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제공과 은퇴자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1. 검토 배경



- 영국 정부는 2015년 4월부터 DC형 퇴직연금의 일시금 수령 시 불이익을 축소하는 등 은퇴자의 퇴직연금 지급방식 선택권을 강화하는 개혁안을 시행함.
 - 영국은 지금까지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75%에 대하여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55%의 높은 세율을 부과해 왔으며, 실질적으로 종신연금 또는 분할인출(withdrawal) 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제해 왔음.
 - 그러나 영국 의회는 2014년 3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일시금 수령에 대해 55% 세율 대신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함으로써 일시금 수령에 대한 불이익을 축소하였고, 이는 은퇴자의 퇴직연금 지급방식에 대한 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함임.
 - 한편 2011년에는 강제 종신연금 전환 규정을 완화하는 등 영국 의회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연금 지급방식에 대한 자율권을 점차 강화해 왔음.

- 우리나라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방식에 제약이 없으며, 은퇴자의 대부분이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¹⁾ 2014년 말 기준 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의 일시금 수급자 비율은 95.2%이고 연금 수급자 비중은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²⁾ 2015년 세제개편 이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실효세율이 3% 미만이며, 이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적용되는 연금소득세 3.3%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음.
 - 2015년부터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에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의 70%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여 연금수령을 유도함.

- 본고는 영국 DC형 퇴직연금 지급방식 제도 개선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퇴직연금의 연금지급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강

1) 금융감독원(2015. 2), "2014년도 퇴직연금 영업실적 분석결과".
 2) 기획재정부(2014. 8), "2014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설명자료".

제해왔던 영국이 은퇴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고 있는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국제적인 흐름이 퇴직연금의 강제화보다 은퇴자의 선택권 강화로 이어진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제도적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화를 강제하자는 주장은 부담이 있을 수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은퇴자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영국의 새로운 퇴직연금제도에 비해서도 은퇴자의 노후소득보장 정도가 약한 것으로 평가됨.

2. 영국 DC형 퇴직연금제도 변화



■ 2015년 4월 이전 영국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수령방식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적립금의 75%에 대해 연금 또는 분할인출을 선택하도록 강제되어 왔음.

-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25%에 대해서는 비과세 일시금 인출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75%에 대해서는 연금 또는 제한된(capped) 분할인출을 통해 노후소득으로 전환해야 하며, 제한된 분할인출의 인출금액은 종신연금 수령액의 120%에 상응하는 금액을 상한으로 함.
 - 단 연금 적립금이 1만 8천 파운드 이하인 경우 전액 일시금으로 인출이 가능하며(trivial commutation) 이중 25%는 비과세 되고 나머지는 소득세율의 적용을 받게 됨.
- 일시금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75%의 적립금에 대해서도 일시금 인출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 5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시금 인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한편 DC형 퇴직연금 이외에 연 2만 파운드의 소득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분할인출액의 크기에 제약 없이(flexible withdrawal) 있으며, 인출액은 소득세율의 적용을 받음.

■ 2014년 3월 영국 의회는 2015년 4월부터 일시금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75%의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기존에 적용하던 고율의 과세를 폐지하면서 적립금 지급방식을 은퇴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함.

- 제도 변경의 결과 55세 이후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25%의 비과세 일시금을 제외하고 연금, 분할인출, 일시금 중 자유롭게 지급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일시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연금

또는 분할인출과 같이 소득세율로 과세됨.

- 따라서 제도 변경 이전에 존재하던 소액 적립금의 전액 일시금 인출허용 제도(trivial commutation), 제한된 분할인출 시 인출금액 상한 제도 등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게 됨.

〈표 1〉 영국 DC형 퇴직연금 지급방식 제도 변화

구분	2014년 이전	2015년 4월 이후
비과세 일시금 인출 한도	총 적립금의 25%	총 적립금의 25%
추가 일시금 인출 시 세율	55%	소득세율
은퇴 시 선택옵션	연금보험 또는 분할인출	제한 없음
소액 적립금 인출 허용한도	총합계 1만 8천 파운드 미만	제한 없음
정기인출 시 한도	연금수령액의 120%	제한 없음
제한 없는 인출 기준	2만 파운드 이상의 은퇴소득 확보 시	제한 없음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일시금 인출이 자유로워지면서 은퇴자의 일시금 인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은퇴자들이 임대주택 구입 등에 일시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됨.

- 은퇴자들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한 후 주택매입 및 임대를 통해 연금과 유사한 정기적인 노후소득을 창출하는 방식이 선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가격 상승을 야기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은퇴자가 은퇴자산 전액을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 일시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최고소득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소득세 부담으로 인해 임대소득을 통한 노후소득은 연금 또는 분할인출의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
- 은퇴자는 세금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시금을 매년 나누어 인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출금액을 소득세율이 변경되는 과세표준으로 함으로써 세금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DC형 퇴직연금의 평균 적립금이 3만 파운드에 불과해 주택임대시장의 호황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은퇴자들은 여전히 종신연금을 선택할 수 있지만 다양한 분할인출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종신연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저금리 상황에서 종신연금 수익성이 하락한 것도 이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임.

- 은퇴자들이 적립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인출하지 않는다 해도 분할인출 시 인출금액에 대한 제한이

사라짐으로써 다양한 인출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종신연금 수요가 분할인출 수요로 대체될 것으로 보임.

- 변경된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인 2015년 4월 23일 Financial Times³⁾는 종신연금 수익률(annuity rates)⁴⁾이 사상 최저치로 하락했다고 지적하였으며, 종신연금 수익률은 기대수명 증가와 시중금리 하락이 겹치면서 수년간 하락해 왔음.
- 연금 수익률 하락과 퇴직연금제도 개선안 발표로 인해 2014년 4/4분기 종신연금 판매는 50% 이상 감소한 반면, 분할인출은 두 배 가까이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번 제도 개선의 의도는 은퇴자의 노후소득보장 약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 근로자들의 은퇴저축을 장려하고 사적 연금시장을 효율화하는 데에 있음.

- 이번 연금개혁을 통해 많은 은퇴자가 적립금을 일시금으로 인출하면서 DC형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약화될 수도 있으나, 저금리 환경으로 연금 수익률이 낮은 상황에서 연금지급 방식의 자율화는 현 근로자들의 은퇴저축을 장려할 유인이 될 수 있음.
- 또한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효용을 증진시키고 연금보험 시장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연금시장을 활성화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음.
- 생명보험회사가 연금수요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면 소비자 니즈에 맞는 다양한 신상품 개발을 통해 연금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은퇴자의 연금상품 수요가 감소할 경우 연금시장의 역선택 확대로 보험료가 인상되고, 연금시장이 위축될 가능성도 상존함.

■ 은퇴자들의 선택권 확보는 노후소득상품의 복잡성으로 인해 불완전 판매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 은퇴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더라도 은퇴자들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노후소득상품의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 불완전 판매 또는 사기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 실제로 1986년 영국 정부가 근로자의 퇴직연금(Occupational Pension Scheme) 강제가입을 완화하도록 제도를 변경한 후 연금판매인들이 수수료가 더 높은 개인연금(Personal Pension Plans) 가입을 유도하면서 많은 은퇴자가 불완전 판매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음.
- 이번 연금개혁은 독립 재무 서비스(Independent Financial Advice) 시장을 확대시킬 것으로 전

3) Financial Times(2015. 4. 23), "Annuity rates fall to record lows after sweeping pension reforms".

4) 종신연금 보험료 대비 연금 수령액 수준을 나타내는 수익률임.

망되며, 영국 정부는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노후소득상품 선택과 관련한 가이드를 제공하기로 함.

■ 한편 2014년 6월 OECD는 영국의 퇴직연금제도 변화에 대해 은퇴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이 약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함.

- 2012년 OECD는 DC형 퇴직연금 설계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로드맵에서 OECD는 공적연금의 기능이 약한 경우 DC형 퇴직연금제도가 연금보험을 디폴트 옵션으로 제공할 것을 권장함.
- OECD는 영국의 경우 공적연금의 역할이 크지 않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나, 이번 제도 변화는 OECD의 권고에 역행하는 것으로 은퇴자들이 장수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함.
- 또한 영국의 연금 연구기관 Pensions Institute도 종신연금은 DC형 퇴직연금제도의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지적하고 이번 제도 변화가 은퇴자에게 종신토록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DC형 연금 제도의 본분을 망각한 조치라고 비판함.

3. 우리나라 퇴직연금 지급방식 현황



■ 우리나라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일시금 수령에 제약이 없으며, 연금수령을 장려하는 세제유인도 약한 것으로 평가됨.

- 우리나라는 퇴직소득을 근로소득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분류과세를 통해 예외적으로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 자료⁵⁾에 따르면 총급여 3천 500만 원, 7천만 원인 은퇴자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실효세율은 각각 2.4%, 3.1%로 연금수령 시의 세율 3.3%에 비해 일시금 수령이 세제 측면에서 오히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
 - 총급여 1억 2천만 원, 2억 원인 경우 일시금 수령 시 실효세율은 각각 3.6%, 4.0%로 높지만 퇴직자 중 비중은 크지 않음.
- 2015년 세제개편⁶⁾으로 연금수령 시 세율을 일시금 수령 시 세율의 70% 수준으로 조정하였으나,

5) 기획재정부(2014. 8), "2014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설명자료".

연금과 일시금에 대해 모두 근로소득으로 종합과세하는 영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연금수령을 장려하는 세제유인은 약하다고 판단됨.

■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지급 비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4%대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는 퇴직연금의 연금지급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보임.

- 금융감독원 발표⁷⁾에 의하면 2014년 4/4분기 중 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55세 이상 퇴직자(약 3만 4천명) 중 연금 수급자는 4.8%(1,611명)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3년 말 3.0%에 비해서는 높아진 것이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임.
- 금융업권별로 연금지급 비율을 비교해보면 종신연금상품을 구비하고 있는 생명보험업권의 경우에도 연금지급 비중이 6.6%에 그치고 있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업권 중 가장 낮은 2.2%를 나타내는 등 모든 업권에서 연금지급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 연금지급 비중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 이처럼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지급 비중이 낮은 것은 세제유인과 같은 연금선택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임.

■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일시금 수령과 연금선택 외에 다양한 지급옵션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연금을 선택하더라도 단기 지급에 그칠 수 있음.

6) 기획재정부(2014. 12),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추진현황".

7) 금융감독원(2015. 2), "2014년도 퇴직연금 영업실적 분석결과".

-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일시금 수령과 연금지급 이외의 지급방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금의 대안으로 노후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함.
- 또한 연금지급기간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지급을 선택하더라도 단기에 적립금을 소진할 가능성이 있음.
- 영국의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종신연금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연금과 유사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분할인출 선택이 가능함.

4. 시사점



- 우리나라의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일시금 선호는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영국의 사례를 감안할 때 일시금 선택을 제한하는 조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일시금 선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국과 같이 일시금 인출에 대해 패널티를 가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영국이 일시금 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를 개편하였음.
 - 저금리로 인해 종신연금 상품의 보장기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연금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칫 은퇴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현 근로자의 은퇴저축 유인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일시금 인출을 제한하는 조치보다는 OECD의 권고와 같이 퇴직연금 적립금 인출 시 연금선택을 디폴트 옵션으로 설정하거나, 연금 선택 시 세제상의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다양한 지급방식을 제공하고, 은퇴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제공과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영국의 사례와 같이 연금과 유사한 노후소득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분할인출 상품을 퇴직연금 지급방식에 포함하여 연금상품과의 조합을 통해 은퇴자가 다양한 지급방식을 설계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은퇴가 임박한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지급옵션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여

은퇴자가 노후소득 확보 관점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 또한 은퇴자가 종신연금 상품에 대한 가격 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품비교 서비스를 강화하여 은퇴자가 최적의 상품을 가입하도록 하고, 연금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kiri](#)